



세계 각국의 PL 입법현황

글·심우섭 대표 상아전기의료기

1. 브라질

브라질은 1990년 9월 11일에 제조물책임법을 포함한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기본정책을 규정한 『소비자옹호법』을 제정하여 199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첫째, 제조물의 결함 뿐만 아니라 「용역의 제공에 관한 결함, 나아가 용역의 향수(享受) 및 위험에 관한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정보에 의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용역의 제공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둘째, 제1차 농산물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오직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입법내용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필리핀 소비자법과 마찬가지로 결합의 존재에 관한 추정규정이 있어서 제조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단체나 피해자집단에게도 소송직결을 인정하고 있어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실체법과 소송상의 절차까지 규정한 종합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이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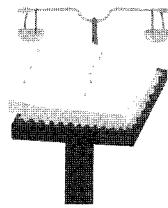
2.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가장 독특한 PL입법내용을 가진 국가이다. 결합제조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민사책임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피해자구제를 민사책임제도에 의하지 않고 사회보장적인 제도로 제조물사고의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고보상제도는 사고의 원인을 묻지 않고 사고에 의한 인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사실에 기초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이며, 1972년에 제정된 사고보상법에 의거하고 있다.

여기서 물적인 손해는 제외되며, 이는 종래의



과실책임에 의한다. 여기서는 사고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 제조물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노동재해사고, 스포츠중의 사고 등에 모두 적용되고 타인의 범죄행위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포함한다(1992년 법 제8조).

이 제도는 보상을 할 때에 제조물의 결함은 문제삼지 않는 점, 피해자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지 않는 점, 거출액이 사고율과 손해율에 관계하지 않는 점에서 사업자와 사용자 쌍방에게 안전성향상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s)가 없어서 안전성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3.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92년에 개정된 거래행위법개정법(Trade Practices Amendment Act 1992)에 의해 거래행위법에 제5장A에 더하여 그것이 제조물책임법으로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법은 연방차원의 법률이며, 주 차원에서는 별도의 규제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법의 특징으로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거래행위위원회에 의한 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어 대량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구제절차가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PL법 연구회의 “입법제안·제조물책임법”에서는 소비자 음부즈맨에 의한 원인판결제도의 도

입에 의한 대량피해의 구제가 도모되고 있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미 제도화되고 있었다.

둘째, 연방의 강제기준에 따른 경우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를 면책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EU지침은 강제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제조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가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점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제도의 방식이 EU지침보다도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일보 강하게 진전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이 법률에서는 제조는 성육(成育)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법률전체를 통하여 동산의 정의에는 동물, 어패류, 수목, 작물(作物)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산물에 관해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4. 필리핀

필리핀에서는 1992년에 성립한 소비자법(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의 제5장이 제조물책임법으로 되어 있다.

필리핀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비자법의 특징은, 첫째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제조물 일반에 대하여 그 결함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비스(용역)의 결함에 대

해서도 무과실책임을 과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처럼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입법은 브라질의 법률과 러시아연방의 법률 등에서 볼 수 있을 뿐 다른 나라의 입법에서는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드문 예이다. 또한 결함에 관한 추정규정이 있다.

둘째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와 하자에 의한 대금감액이나 하자보수의 문제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법이라는 성격으로부터 이러한 형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제조물책임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른 나라의 입법과 비교하여 하나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결함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97조 제4항은 “제조업자, 제작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하에 대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 다음에 (b)호에서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였지만 그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타 지불액의 반환에 관하여 특이하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고 있고 제조물책임분야에도 형별을 도입하고 있다.

아시아 및 기타국가의 입법현황

| 국가 | 입법시기 또는 상황 | 입법형식 | 선택조항의 채택여부 | | | 비고 |
|---------|----------------------------------|--------------|---------------------|---------------------|---------------|-----|
| | | | 제1차 농산물의 적용여부 | 개발위험의 항변 채용여부 | 책임한도액 설정여부 | |
| 브라질 | 1990. 9. 11 제정 1991. 3. 11 시행 | 소비자 옹호법 | 제외 | 불채용 | 없음 | 남미 |
| 오스트레일리아 | 1992. 6. 24 제정 1992. 7. 09 시행 | 거래행위법 개정법 | 제외 | 채용 | 없음 | 대양주 |
| 필리핀 | 1992. 4. 13 제정 1993. 7. 16 시행 | 소비자법 | 제외 | 불채용 | 없음 | 아시아 |
| 중국 | 1993. 2. 22 제정 1993. 9. 01 시행 | 산품질량법 | 제외 | 채용 | 없음 | 아시아 |
| 일본 | 1994. 7. 01 제정 1995. 7. 01 시행 | 제조물 책임법 | 제외 | 채용 | 없음 | 아시아 |